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7

발의연월일: 2021. 6. 14.

발 의 자 : 임이자·권성동·박덕흠

엄태영 · 이종성 · 서범수

정점식 · 추경호 · 하영제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해 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완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일부 업종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년말이 되면 5년 6개월이 경과되는데,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 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1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을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로, "징수금의"를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 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한 경우
- 2.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체납이 3회 이상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이전에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기한이 자

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
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	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	
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	
<u>우에는</u>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u>징수</u>	<u>체납</u>
<u>금의</u>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된 징수금에 대하여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
	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
	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
	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
	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u>경우</u>
<u><신 설></u>	2.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체납이 3회 이상인
	<u>경우</u>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